

(붙임3)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홈페이지 등 게재용)

항상 양서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연대보증 포함)한 아래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여신

(기준일자 : 2024.11.27.)

차 주			윤 * * 귀하				
관련 보증인			채권금융회사 자율기재항목				
계좌번호	대출 일자	만기 일자	대출 잔액(원)	연체금액(원)			연체시작일
061-0808-7***-**	16.12.02	24.06.02	30,000,000	미납원리금	원금	30,000,000	2023-10-05
					이자	70,191	
				연체이자		3,538,786	
				비용		0	
				합계		33,608,977	

※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2. 관련 통지사항

항 목	내 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024. 11. 27.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장기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법적조치를 통한 원금회수 실행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방법	양서농협 홈페이지 채권공고 참조

아울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농협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재약정,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이자감면, 담보권 실행 유예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 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양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성호

담당자 : 팀장 이정훈

